

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

심 사 보 고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1월 25일

나.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제82회 서구의회(정기회) 회기중

-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8년 12월 22일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보건소장 최영자)

가. 제안 사유

-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 양상의 변화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의료 수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.
-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·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으로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여 계획시행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함.
- 이번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~2002년(4년간)의 중기의료계획임.

나. 주요 골자

-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(P. 1~4)
-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(P. 5~9)
- 지역 현황과 전망
-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
 -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 (P. 38~42)
 - 향후 4년간 역할 변화 및 사업 계획 방향 (P. 43)
 - 보건소 업무 계획 및 추진전략 (P. 44)
 -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(P. 44~56)
 - 서비스별 보건사업 (P. 57~85)
-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(P. 86~95)
- 지역조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(P. 96~99)
- 첨부서류 (P. 100~107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이재천)

- '96. 7. 1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전국민의 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보건행정의 방향이 바뀌어짐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 4개년계획(1999~2002)이 수립 되었음.
- 자치단체 스스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과 돌보기 차원으로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주민의 욕구는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서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요구하고 있음.

- 지역보건의료 4개년(1999~2002) 사업계획은
 - 건강증진 사업으로 생의 주기별 보건서비스 향상은 영유아 보건사업, 학생보건사업, 성인보건사업, 모성보건사업, 노인보건사업이며
 -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의 가정방문으로 고혈압, 당뇨, 암환자 등의 등록관리와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해 투약, 영양지도, 생활습관개선 등을 실시하고
 - 정신 및 재활 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과 재활보건사업이며,
 - 방문보건사업과 급성 전염병관리사업, 의약물관리 사업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도에 따라 서구지역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고 할 것임.

- 지역보건법 실시 후 2년간(1997~1998)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를 근거한 향후 4개년(1999~2002) 계획방향은 각종 통계자료 조사에 의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보건의료체계의 개발과 보급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.

4. 관련 법 규

- 지역보건법 제3조, 제4조
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, 제4조, 제5조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9. 기타사항 : 없음